

중국의 인터넷법원 법제화

-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손한기 | 중국 남경이공대학 지식재산권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1. 서론

소송도 온라인 쇼핑처럼 법원에 가지 않고도 집, 사무실 등지에서 PC와 스마트 폰으로 손쉽게 할 수 없을까? 가능하다!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국의 인터넷법원을 이용하면 소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이 나오는데 1달이 채 안 걸린다. 소장 작성법을 몰라도 된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에 간단히 입력만 하면 인공지능이 소장을 자동으로 완성해 주고, 인공지능 법관이 소송과 관련한 당사자의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도 해준다. 그동안 중국 내 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원고의 입안 어려움(立案难, 소제기 자체의 어려움)과 피고에게 소장 송달 어려움(送达难)의 문제도 없다. 인터넷법원이 중국 통신사와 협력하여 소장까지도 피고의 스마트 폰으로 바로 송달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스마트 폰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도 마찬가지로 손쉽게 스마트 폰, PC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소 제기부터 소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 당일에도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재판은 집이나 근처의 인터넷이 가능한 조용한 장소에서 법관, 원고와 피고는 화상채팅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 미국, 유럽과 일본에서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온라인 분쟁해결제(Online Dispute Resolution: ODR)'가 중국에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가 바로 항저우(杭州)를 시작으로,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에 설립된 중국의 '인터넷법원(互联网法院)'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영문명: Alibaba, 원문명: 阿里巴巴)의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 처음 설립된 인터넷법원은, 설립 취지와 달리 수리한 사건의 70% 이상이 저작권 관련 분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법원이 광범위하

게 활용되는 이유는 최근 저작권 침해가 과거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는 항상 '전송권(right of transmission)'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도 중국의 인터넷법원을 활용하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분쟁 등 중국에서 온라인상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개혁

중국 인터넷법원은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장 많이 수리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인 '지식재산권법원'과의 구별이 문제된다.

1.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원 설립 경과

(1) 지식재산권법원

중국에서 개혁개방과 더불어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지식재산권체도가 점진적으로 마련된 이래,¹⁾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는 사건수리범위, 사건수량 등에서 '무에서 유로(从无到有), 약에서 강으로(由弱到强)'의 변화를 거쳤으며,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체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²⁾ 2008년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는 "특허 등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사건의 심판관할권을 적절히 통일시키는 문제를 연

1 중국에서 저작권법(著作权法)은 1990년 9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1991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1년 10월 21일 1차 개정을 2010년 2월 26일 2차 개정이 이뤄졌다. 2012년부터 3차 개정을 준비 중이며, 지난 2014년 저작권법 개정초안이 공개되어 의견수렴 절차까지 거쳤지만 아직 개정되고 있지 않다. 특허법(专利法)은 1984년 3월 12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1985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92년 9월 4일 1차 개정, 2000년 8월 25일 2차 개정, 2008년 12월 27일 제3차 개정이 이뤄졌다. 현재 제4차 개정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표법(商标法)은 1982년 8월 2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1983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93년 2월 22일 1차 개정, 2001년 10월 27일 2차 개정, 2013년 8월 30일 3차 개정, 그리고 2019년 4월 23일 제4차 개정이 이뤄졌다.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은 1993년 9월 2일 전인대 상무위원에서 통과되어 1993년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 14일 1차 개정, 2019년 4월 23일 2차 개정이 이뤄졌다.

2 马一德, 知识产权司法现代化演进下的知识产权法院体系建设, 法律适用, 2019年第3期, 第39页.

구하고, 지식재산권 상소법원의 건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6년 후인 2014년 6월 6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제3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법원의 설립에 관한 방안(关于设立知识产权法院的方案)’이 심의 후 통과되었다. 2014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을 정식으로 발표하였고 이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었다.

(2) 인터넷법원

2017년 6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제36차 회의에서 ‘항저우 인터넷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关于设立杭州互联网法院的方案)’이 통과되었다.³⁾ 2017년 8월 18일 설립된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인공지능을 재판의 보조수단으로 재판에 도입했는데, 그 결과 소송비용 감소와 소송효율을 크게 제고시켰다. 특히 다양한 심판단계인 입안, 거증과 질증, 스마트 재판, 언어식별, 전자송달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미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통해 저장한 전자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음은 물론 최고인민법원의 유관 사법해석도 발표되었다.

2018년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3차 회의에서 ‘베이징 인터넷법원, 광저우 인터넷법원의 증설에 관한 방안(关于增设北京互联网法院,广州互联网法院的方案)’이 통과되어, 항저우에 이어 베이징(2018년 9월 9일)과 광저우(2018년 9월 28일)에도 인터넷법원이 설립되었다. 2018년 9월에는 최고인민법원이 ‘인터넷법원 심리사건에 관한 약간문제의 규정(关于互联网法院审理案件若干问题的规定)’을 공포해서 인터넷법원의 관할 문제와 상소심 문제를 명확히 했다.

3) 당시 신화사(新华社)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 “항저우 인터넷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사법이 주동적으로 인터넷 발전이라는 대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중대한 제도적 혁신이다.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적극적으로 안정적이게, 사법규율을 준수하면서,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인터넷 관련 사건의 소송규칙을 탐색하고, 심리체계를 개선하고, 심판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안전을 수호하고, 온라인 분쟁을 해결하고, 인터넷과 경제사회의 심오한 융합 촉진을 위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http://www.sohu.com/a/152177634_349129 (2019년 11월 2일 최종방문).

(3)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최고인민법원은 직접 지식재산권 사건의 2심이자 상소심을 담당하는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을 설립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의 산하기관이자 상설 심판기구로서 전국적 범위의 특허, 반독점 등 전문적이고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민사와 행정사건의 상소사건을 담당하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적도 통일이라는 사명을 지고 있다.⁵⁾⁶⁾ 즉, 중국에서 특허 등 사건의 경우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 고급인민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상소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상소를 ‘비약상소(飞跃上诉)’라고 부른다.

4 2018년 2월 최고인민법원은 국가급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심리시스템을 설립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데, 최종적으로 베이징시에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여 전국적 범위 내의 특허 등 상소사건에 대한 통일적인 심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당 중앙의 비준을 받게 된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법률안을 초안하게 되고, 동 초안에 대해서 2018년 10월 26일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사건 소송절차 약간문제에 관한 결정(关于专利等知识产权案件诉讼程序若干问题的决定)’이 심의 후 통과되게 된다. 2달 후인 2018년 12월 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56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유관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有关问题的规定)’을 발표하여 사건 심리의 범위와 소송절차 연계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5 李·剑·廖继博, 国家层面知识产权案件上诉审理机制: 历史, 现状与展望, 法律适用 2019年第 1期, 第73页.

6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약간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제2조는 “지식재산권법정은 아래와 같은 사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발명특허, 실용실안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설계, 기술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독점 1심 민사사건판결과 재정에 대하여 제기한 상소사건
- ②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발명특허, 실용실안특허, 외관설계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설계 권리부여와 권리확인과 관련한 1심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 및 재정에 대하여 제기한 상소사건
- ③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의 발명특허, 실용실안특허, 외관설계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설계, 기술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독점행정처벌 등에 대해 내린 1심 행정사건 판결 및 재정에 대하여 제기한 상소사건
- ④ 전국범위 내의 중대, 복잡한 동 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1심 민사 및 행정사건
- ⑤ 동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1심 사건의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서에 대한 재심신청, 항소, 재심 등에 대하여 심판감독절차를 적용하는 사건
- ⑥ 동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1심 사건 관할권에 대한 쟁의, 벌금, 구료 결정에 대하여 복의심리기한 등의 연장을 요구한 사건
- ⑦ 최고인민법원이 마땅히 지식재산권법정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기타 사건

2. 지식재산권법원과 인터넷법원의 비교

(1) 지식재산권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은 쉽게 말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문제를 전담하는 법원을 말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한 이유는 이들 지역이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경우 저작권, 상표, 특허와 관련된 중앙행정부처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1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를 주관하는 국가지식재산권국, 과거 상표를 주관했던 국가공상국, 저작권을 주관하는 국가판권국 등 기관들이 수도인 베이징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만을 담당하며, 형사소송은 여전히 과거와 같이 기층법원에서 1심을 관할한다.

지식재산권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 중국의 중급법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층법원이 1심인 지식재산권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설치된 곳의 경우 지식재산권법원이 2심을 담당하고, 지식재산권법원이 1심을 담당할 경우,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고급인민법원이 2심을 관할(보통 저작권, 상표 관련 분쟁에 한정됨)하거나 또는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관할한다.

(2) 인터넷법원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 보급율의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 폰 등 이동통신기기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한 온라인 영역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법적 문제는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는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영역 또한 상당한 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률전문가로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인터넷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처음으로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에 인터넷법원을 설립했으며, 그 이후 베이징과 광저우에 인터넷법원을 추가 설치했다. 이렇게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인터넷법원을 설치한 이유는 이들 지역에서 온라인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중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두 법원의 비교

지식재산권법원은 중급법원에 해당하며, 인터넷법원은 기층법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법원은 동일한 심급의 법원이 아니다. 이심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인터넷법원이 심리한 1심 저작권 사건의 경우, 2심은 지식재산권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식재산권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중급인민법원이 담당한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인터넷법원의 상급법원이다. 참고로 중국의 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법원의 4단계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쟁, 그 중에서도 특허 등 전문적이고 기술성이 강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전문법원(专门法院)'이다. 하지만 인터넷법원은 그 관할대상이 인터넷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전문법원'이 아니라 보통의 기층인민법원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전문법원의 경우 그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전문법원은 지식재산권법원, 군사법원, 해사법원 등만 해당하고 인터넷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⁷⁾

1) 인터넷법원과 지식재산법원의 관할 차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소재 시(市) 관할구 내의 아래와 같은 1심 사건을 관할한다.

- ①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 기술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민사 및 행정사건
- ② 국무원 부문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내린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행위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사건
- ③ 저명상표(驰名商标) 인정과 관련된 민사사건

7 참고로 중국에서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관할지역의 특수성 때문인데, 즉 특별한 지역에 전문법원을 설립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철도운수법원(铁路运输法院)이다. 다른 하나는 관할사건의 전문성 때문인데, 사건발생원인이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원배치와 관할체제에서 일반법원과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해사법원(海事法院)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于志刚, 李怀胜, 杭州互联网法院的历史意义, 司法责任与时代使命, 比较法研究, 2018年第3期, 第105-106页.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아래와 같은 행정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

- ① 국무원 부문이 내린 특허, 상표, 식물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설계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부여(授权), 권한 확인(确权) 결정에 불복할 경우
- ② 국무원 부문이 내린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설계의 강제허가결정 및 강제허가 사용료 또는 보수에 관한 재결에 불복할 경우
- ③ 국무원 부문이 내린 지식재산권 권리부여(授权), 권한확인(确权)과 관련된 기타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이와 달리 인터넷법원의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온라인 쇼핑에서의 구매 계약 체결과 이행으로 인한 분쟁
- ②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인터넷서비스계약의 체결과 이행행위와 관련된 분쟁
- ③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금융대출계약 분쟁, 소액대출계약분쟁의 체결과 이행행위와 관련된 분쟁
- ④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작품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권한귀속에 관한 분쟁
- ⑤ 온라인상 공표 또는 전파된 작품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침해로 발생한 분쟁
- ⑥ 인터넷 도메인 네임(internet domain name)의 권한귀속, 침해 및 계약 분쟁
- ⑦ 인터넷상 타인의 인신권, 재산권 등 민사권익을 침해해서 발생한 분쟁
- ⑧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한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인신·재산권익에 침해를 가해 발생한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
- ⑨ 검찰기관이 제기한 인터넷 공익소송사건
- ⑩ 행정기관이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 인터넷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 등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
- ⑪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로 지정한 기타 인터넷 관련 민사사건 및 행정사건

2) 상소심 법원의 차이

지식재산권법원의 상소심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사건관할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北京,上海,广州知识产权法院案件管辖的规定)’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거에는 지식재산권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심판정에서 심리했지만, 위의 지식재산권 심판 사법개혁에서 보았듯이, 현재 지식재산권법원에서 1심을 담당한 사건의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이 아니라 최고인민법원의 파출법원인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직접 관할한다.

이와 달리 인터넷법원의 상소심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인터넷법원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互联网法院审理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내린 판결, 재정에 상소를 제기한 사건은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하지만, 온라인상 저작권의 권한 귀속 및 침해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의 상소사건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한다. 당사자가 광저우 인터넷법원이 내린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한 사건은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하지만, 온라인상 저작권 권한 귀속 및 침해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의 상소사건은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한다. 당사자가 항저우 인터넷법원이 내린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한 사건은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인터넷법원은 기층법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법원의 상소심 법원은 해당 지역의 중급법원이다. 하지만 인터넷법원이 현재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설치되어 있는데, 베이징과 광저우의 경우 지식재산권법원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식재산권법원이 상소심을 담당한다. 이와 달리 항저우의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상소심을 담당한다.

III. 중국 인터넷법원 제도 개관

1.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인터넷법원제도

ODR의 개념정의를 쉽지 않고 아직 확정된 개념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갈수록 많이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등장했다.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한 분쟁해결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⁸⁾ ODR은 인터넷 기술과 대체적 분쟁해결이 상호 결합하여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⁹⁾, 현재 국제적으로 ODR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온라인 협상(Online Negotiation), 온라인 조정(Online Mediation), 온라인 중재(Online Arbitration)와 온라인 사법(Online Justice)이 포함된다. 그중 중국의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사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ODR은 이미 중국의 사법체제 개혁 특히, 스마트 법원 건설에 도입되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 측면에 한정하는 경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온라인 법원은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이라 할 수 있다.”¹¹⁾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8 “ODR은 법원의 재판을 대체하는 분쟁해결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을 그 기원으로 하여 ADR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한다라는 도구적 차원에서 출현한 개념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세계의 확대에 의해 이제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은 단순히 ADR의 도구적 확장개념이 아닌 고유한 개념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각 당사자의 주된 소통과정인 온라인 소통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말하며,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은 태생적으로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의 대량의 소액 사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계인국·김현범,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제16면, 제75면.

9 ODR은 신속성, 저렴성, 접근의 용이성, 편의성 등의 특징을 지닌 기존의 ADR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줄 뿐 만 아니라, 단점의 일부를 보완해 주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점차로 커지면서 그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손승우,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연구(1)”, [비교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6, 19면.

10 涂永前·于 涵: ‘互联网法院: 传统法院转型的一种可能性尝试’, 互联网天地(CHINA INTERNET), 2018.4, 第10-11页.

11 계인국,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요약본], 사법정책연구원, 2018, 8면.

2. ‘최고인민법원 인터넷법원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¹²⁾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 인터넷법원의 소송활동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가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9월 6일 ‘최고인민법원 인터넷법원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互联网法院审理案件若干问题的规定)’이라는 사법해석을 공포하였다. 동 ‘규정’에는 인터넷법원의 관할범위, 상소제도, 소송플랫폼구축, 온라인 소송에서의 신분인증, 입안(立案), 응소, 거증(举证), 재판, 송달, 서명, 소송서류 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에서는 규정의 내용 중 중요 내용만을 선별하여 살펴본다.

(1) 인터넷법원의 소송 전 과정 온라인 심리원칙

‘규정’ 제1조는 인터넷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全程在线)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온라인 분쟁은 온라인에서 심리한다(网上纠纷网上审理).” 여기서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사건의 수리, 송달, 조정(调解), 증거교환, 소송 전 준비, 재판, 판결 선고 등 소송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1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인터넷법원은 일부 소송과정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의 권익을 더욱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있어서 신분확인 어려움, 원본확인 필요성, 실물에 대한 조사와 검증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록 일부 소송 과정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지만, 여전히 다른 소송과정은 온라인에서 진행해야 한다.

12 아래 내용은 최고인민법원 인터넷법원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과 胡仕浩·何帆·李承运, 《最高人民法院关于互联网法院审理案件若干问题的规定》的理解与适用, 中国法院网, 2018年9月8日, 第004版的 주요 내용 중 일부 내용 및 베이징 인터넷법원 법관 3인에 대한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한 내용이다.

(2) 인터넷법원 관할범위의 확정기준

인터넷법원은 소재한 시의 관할지역 내의 특정유형의 온라인 사건을 집중 관할하는 기층인민법원이다. 즉 '특정유형'의 사건만 관할하지, 모든 온라인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하다.

(3) 인터넷법원이 관할하는 주요 사건의 유형

온라인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유형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문화산업을 번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관련 법률을 꾸준히 제정 및 공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음악, 인터넷문학, 온라인 게임 등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의 권리귀속과 침해 분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은 이러한 사건의 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귀속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공표한 저작물, 즉 온라인 저작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처음 공표되지 않은 소위 '비온라인저작물(非网络作品)'의 권리귀속 문제는 설사 해당 저작물이 나중에 온라인을 통하여 전송 등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침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에서 공표 또는 전파된 작품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분쟁이어야 한다. 여기서 '온라인 전파(在线传播)'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주체, 수단, 방식이 인터넷상 전파형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전파(传播)'라는 용어에는 전송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 보통은 전송권 침해가 문제되고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의 문제 중 대다수가 전송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귀속의 문제 외의 침해문제의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 권리침해가 이뤄졌을 경우 인터넷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4) 협의관할의 문제

당사자의 소송 편의를 위하여, '규정' 제3조는 “당사자는 동 규정 제2조가 확정한 계약 및 기타 재산권익분쟁의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협의로서 쟁의와 실제 연계된 지역의 인터넷법원 관할로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는 협의를 통한 약정으로 어느 인터넷법원의 관할로 할지 정할 수 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및 유관 사법해석에 따르면, 쟁의와 실제 연계된 지역이란 원고의 주소지, 피고의 주소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해야 할 온라인플랫폼경영자의 주소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전에 관할과 관련한 약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소된 침해행위와 관련된 인터넷 서버, 컴퓨터 서버 등 설비 소재지, 피해자 소재지 등도 협의를 통하여 쟁의와 실제 관련된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운영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표준약관을 통하여 관할협의를 체결하도록 하여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소송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 제3조 제2항은 협의관할에 적용될 표준약관과 관련된 규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인터넷법원은 표준약관의 내용이 협의관할조항과 충돌될 경우 그 효력을 부인 즉, 무효화하는 결정을 한다.

(5) 사건 관련 데이터의 접속

'규정' 제5조는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소송플랫폼을 구축해서,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소송을 개시할 수 있고, 법원이 온라인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법원 설립방안의 요구에 따라 소송플랫폼은 시스템 안전, 기술 중립의 요건을 만족시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유관 국가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안과 관련된 데이터의 질서 있는 입력, 안전관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인터넷법원이 온라인상에서 유관 정보를 확인하고 증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법원이 심리할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관 국가기관이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사안과 관련된 데이터(涉案数据)'란 인터넷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요청해서 취득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요청하여 취득한 사안과 관련된 전자증거, 신분정보 및 기타 유관 정보를 말한다.

(6) 온라인 소송 규칙

‘규정’은 항저우 인터넷법원의 온라인 심리의 경험을 기초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소송과 관련한 절차규칙을 확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일부 규정을 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1) 신분인증규칙

신분인증은 온라인 심리의 필요적 절차이다. 인터넷법원은 반드시 신분인증 절차를 통하여, ‘사람(人)’, ‘사건(案)’, ‘계정(账户)’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규정’ 제6조는 신분인증규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현재 온라인상 신분인증이 불가하다. 그 이유는 현재 신분인증시스템이 중국 공안국의 신분인증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신분증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신분인증은 반드시 현지 인터넷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분인증 이후에는 외국인도 중국 국민과 동일하게 인터넷법원의 소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2) 온라인 증거규칙

‘규정’ 제9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유형의 증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방식을 정하고 있다. 오프라인 증거의 경우 당사자는 스캔, 사진 복제, (녹음, 녹화)복제 등의 방식으로 전자데이터로 전환한 이후 소송플랫폼에 업로드 해야 한다. 온라인 증거의 경우,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 당사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증거의 경우, 링크제공, 자료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소송플랫폼에 입력하면 된다. 둘째, 인터넷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자증거채증 및 보전 플랫폼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정보를 소송플랫폼에 입력한다. 특히, 두 번째 방식은 당사자의 거증에 큰 편의를 제공하며 전자증거의 채증 어려움, 거증 어려움, 인증(认证)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3) 전자증거의 진실성 인정규칙

현재 전자데이터의 진실성(真实性)에 대한 심사판단은 주로 공증(公证)절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형식심사 위주이며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며 증명력도 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 제11조는 전자증거 진실성 인증규칙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첫째, 인정대상(认定对象)과 관련하여 전자증거의 생성, 수집, 저장, 전송 등 모든 단계의 진실성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심사내용에 있어서, 전자데이터 생성플랫폼, 저장매체, 보관방식, 채증주체, 전송과정, 검증(验证)형식 등 다방면에 걸친 심사를 강조한다. 셋째, 인정방식에 있어서, 당사자가 전자서명, 신뢰타임스탬프, 해시함수, 블록체인 등 기술수단을 이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채증 및 증거보전 플랫폼 등을 통하여 증거에 대한 고정, 보존, 수집, 채증을 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공증절차에 근거한 전자증거인증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있는 등 전자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고 있다.

4) 온라인 재판 규칙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각 온라인 재판의 적용범위, 간소화 조건과 재판기율을 정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 재판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인터넷법원의 온라인 재판절차는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물론 일반절차사건도 포함된다. 둘째, 온라인 재판에서 심리는 반드시 영상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그림과 글 또는 음성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온라인재판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인터넷법원은 소송플랫폼을 통하여 법정심리 이전에 이미 온라인상으로 신분확인, 권리의무고지, 거증과 질증, 쟁의 없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고정 등의 단계를 거쳤으므로, 실제 재판에서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또는 병합해서 진행한다. 넷째, 재판 기율과 관련하여 ‘규정’은 당사자가 적시에 온라인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판참석거부(拒不到庭)’로 간주하며, 재판 중 독단적으로 퇴장할 경우, ‘중도퇴장(中途退庭)’으로 간주한다.

5) 전자송달규칙

전자송달은 인터넷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송달방식이다. ‘규정’ 제15조는 전자송달의 조건, 방식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전자송달주소의 확인과 고지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유효한 송달과 관련한 정황 및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다.

첫째, 전자송달의 적용조건으로 「민사소송법」은 “전자송달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 제15조 제3항은 전자송달의 확인과 고지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음과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불명확 또는 의사표시와 실제소송행위의 모순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묵시적 동의규칙(默示同意規則)’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전자송달에 대하여 사전에 또는 중도에 약정하거나 또는 사후에 인가한 경우 ‘묵시동의’ 규칙을 적용한다.

둘째, 전자송달의 적용대상으로 ‘규정’ 제15조는 “소송문서 및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 등 자료를 전자 송달하는 이외에도 당사자에게 권리의무를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전제 아래,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 또한 전자송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만 포함되며, ‘묵시적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전자송달의 효력발생규칙으로 ‘규정’ 제17조는 ‘도달로 인한 효력발생(到达生效, 도달주의)’와 ‘(내용)숙지로 인한 효력발생(收悉生效)’이라는 두 가지 송달효력 기준과 그 상황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피수신인이 사전에 송달약정을 하거나 송달확인 중 자발적으로 전자주소를 제공 및 확인한 경우, ‘도달로 인한 효력발생’이 적용되며, 송달정보가 해당 전자주소에 도착하는 즉시 유효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전자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자주 이용하는 전자주소 또는 취득이 가능한 기타 전자주소로 송달하며, 이러한 경우 ‘숙지로 인한 효력발생’이 적용된다. 부연하면, 상대방이 ‘받아서 숙지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① ‘반복할 수 없는 직접 확인(不可推翻的直接确认)’으로, “송달은 받은 자가 이미 소송자료를 받았다고 답신을 하거나 또는 소송내용에 근거하여 상응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송달되었다고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② ‘반복할 수 있는 추정확인(可推翻的推定确认)’으로 “송달을 받은 자의 메일이 자동으로 메일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신을 보냈거나 또는 기타 증거로서 송달받은 자가 이미 송달받아서 숙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송달되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과실이 아닌 원인으로 ‘받아서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송달의 효력은 반복될 수 있다.

(7) 공고송달사건에서 간이절차 적용

‘규정’ 제18조는 “공고송달의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한 간단한 민사사건의 경우 인터넷법원은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심급연계(審級銜接)의 문제

‘소송의 모든 과정과 절차의 온라인 심리원칙’을 소송의 모든 단계에 관철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 제22조는 “소송 당사자가 인터넷법원이 심리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2심 법원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심리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실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소송과 같이 오프라인 소송을 진행한다. 즉, 2심 법원은 사건에 정황에 근거하여 오프라인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심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오프라인 방식의 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와 2심 법원이 온라인 방식으로 심리할 경우 사실과 증거인증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 온라인 심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소송플랫폼 등이 완비되어야 하는 등 사전에 미리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인터넷법원을 제외하고는 소송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중급법원과 지식재산권 법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2심의 경우 전통적인 소송방식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9) 규정의 효력범위

심판방식, 소송제도와 인터넷기술의 고도의 융합을 위해서 규정은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일부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사법해석과 ‘규정’이 불일치 할 경우, 인터넷법원은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IV. 인터넷법원 소송 절차(互联网法院办案流程)¹³⁾¹⁴⁾

인터넷법원은 인터넷 기술을 소송 전 과정에 도입하고 있는데, 즉 기소(起诉), 조정(调解), 입안(立案), 거증(举证), 질증(质证), 개정(开庭), 판결(判决)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1. 소장자동생성(诉状智能生成)

소송플랫폼은 소장 스마트생성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원고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장을 완성해 준다.

〈그림-1〉 인터넷재판 플랫폼상 소장자동생성



13 参考任日莹, '互联网法院, 原来是这样审案的', 杭州 2018.5, 第24-25页。

14 현재 중국 인터넷법원의 실명인증시스템은 공안국의 중국 호적 및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중국 공안국에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명인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3대 인터넷법원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의 경우에 부득이 직접 인터넷법원을 방문하여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명인증 이후에는 중국인과 동일하게 인터넷법원 소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인터넷소송플랫폼이 제공하는 언어가 오직 중국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법원에 문의 결과 당분간 영어 또는 한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 계획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인터넷법원 이용 시 중국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지만, 중국어를 잘 구사하는 자인이나 직원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

이처럼 인터넷법원은 ‘인터넷 소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과 같은 편리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한다.

2. 온라인 거증과 질증(在线举证, 质证)

소장 생성 이후, 원고가 ‘나의 소장(我的诉状)’을 클릭하면 거증 단계에 진입하며, 전자증거를 단번에 플랫폼에 입력할 수 있다. 비전자증거의 경우, 스캔, 사진촬영 등의 방식으로 전자증거로 전환해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소송플랫폼에 이미 업로드된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는 직접 온라인에서 문자를 입력해서 질증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림-2〉 당사자 정보 입력



위의 그림과 같이 당사자 정보, 온라인 거래 과정 및 관련 리스트와 데이터 증거를 한 번의 클릭으로 입력할 수 있다.

3. 온라인 조정(在线调解)

원고가 소송플랫폼에 소장을 제출한 후 15일 간의 조정기에 들어서게 되며, 원고와 피고 쌍방은 조정원의 주재 아래 온라인에서 조정을 실시 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은 소송 종료 이전이면 언제라도 조정사이트에 접

속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소송단계에 돌입한다.

〈그림-3〉 특약조정원에 의한 조정



위의 그림과 같이 플랫폼상에 입주한 특약조정원은 백엔드데이터(back-end)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방식의 조정을 할 수 있다.

4. 전자송달(电子送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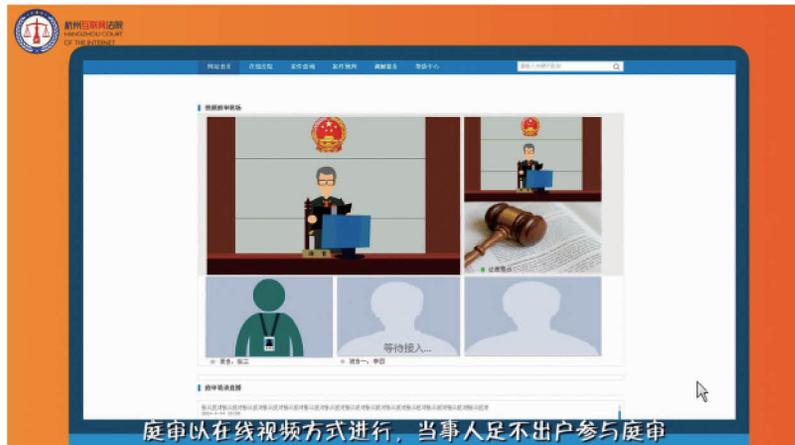
입안 이후, 피고는 실명인증 이후 소송플랫폼에 등록하여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가 '송달확인(送达确认)'을 클릭할 경우 '법원이 전자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피고가 자신의 사건을 자발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관련 법률문서를 전자의 방식으로 당사자가 실명 인증한 핸드폰과 기타 통신기기로 송달하며, 송달한 즉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칙을 적용하여 유효한 송달이 있었다고 본다.

위의 그림과 같이 피고는 피소되었다는 사실 등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스마트 폰 등 통신기기를 통하여 송달 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 폰을 이용할 수 없다.

5. 재판 내용 음성-문서 자동전환(庭审语音自动转换)

재판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언어식별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기원(书记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재판 종료 후 당사자가 '확인(确认)'을 클릭할 경우 재판문서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음성으로 말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되고 당사자는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림-6〉 인터넷재판 상황



이처럼 실제 재판은 온라인 채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집을 나서서 재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6. 인터넷 재판 참관(网络庭审围观)

인터넷법원의 실제 재판과정을 인터넷사건재판 '구경하기(围观)' 기능을 이용하여 참관할 수 있는데, 컴퓨터 또는 이동단말기를 통하여 재판번호를 입력할 경우 재판과정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았듯이 중국의 인터넷법원제도는 분명 전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소송제도임에 틀림 없다. 또한 소송당사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소송을 이용할 수 있고, 소송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기존 중국의 낙후된 사법시스템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인터넷법원제도는 여전히 생성 중에 있는 제도이다. 즉, 완성된 제도가 아니며, 앞으로 더 개선되어 제도가 안정되고 정착되면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이외의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유관 법률 및 사법해석도 재차 제정되어 인터넷법원이 중국을 대표하는 사법개혁의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법원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지만, 사실 처리하는 대다수 사건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특히, 전송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는 처음 인터넷법원을 설립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현재 중국에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권리자 또는 주요 콘텐츠 기업들이 인터넷법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권리자 또한 동 제도를 활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 계인국·김현범,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 손승우,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연구(I), 「비교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马一德, 知识产权司法现代化演进下的知识产权法院体系建设, 法律适用, 2019年第3期.
- 李·剑·廖继博, 国家层面知识产权案件上诉审理机制: 历史,现状与展望, 法律适用, 2019年第1期.
- 于志刚·李怀胜, 杭州互联网法院的历史意义, 司法责任与时代使命, 比较法研究, 2018年第3期.
- 涂永前·于 涵: '互联网法院: 传统法院转型的一种可能性尝试', 互联网天地(CHINA INTERNET), 2018.
- 秦汉, 互联网法院纠纷处理机制研究——以网络著作权纠纷为例, 电子知识产权, 2018年第10期.
- 任日莹, '互联网法院, 原来是这样审案的', 杭州 2018.5.

최고인민법원 인터넷법원 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關於互聯網法院審理案件若干問題的規定)

2018년 9월 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47차 회의 통과,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

제1조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사건의 수리, 송달, 조정, 증거교환, 재판 전 준비, 재판, 심판 등 소송 과정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인터넷법원은 오프라인에서 일부 소송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조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소재한 시의 관할구 내의 기층인민법원이 수리해야 할 아래와 같은 1심 사건을 집중 관할한다.

-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쇼핑 구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인한 분쟁
- ②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인터넷서비스계약의 체결과 이행행위와 관련된 분쟁
- ③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금융대출계약 분쟁, 소액대출계약분쟁의 체결과 이행행위와 관련된 분쟁
- ④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작품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권한귀속에 관한 분쟁
- ⑤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 공표 또는 전파된 작품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침해로 발생한 분쟁
- ⑥ 인터넷 도메인 네임(internet domain name)의 권한귀속, 침해 및 계약 분쟁
- ⑦ 인터넷상 타인의 인신권(인격권), 재산권 등 민사권익을 침해해서 발생한 분쟁
- ⑧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한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인신, 재산권익에 침해를 가해 발생한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
- ⑨ 검찰기관이 제기한 인터넷 공익소송 사건
- ⑩ 행정기관이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 인터넷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 등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
- ⑪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로 지정한 기타 인터넷 민사사건 및 행정사건

제3조 당사자는 동 규정 제2조가 확정한 계약 및 기타 재산권익분쟁의 범위 내에서, 법에 근거하여 쟁의와 실제 관계된 지역의 인터넷법원의 관할로 할 것을 협의로서 약정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등은 표준계약형식으로 고객과 관할협의를 정할 수 있지만, 법률과 사법해석상의 표준약관과 관련한 규정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자가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내린 판결, 재정에 상소를 제기한 사건은,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하지만, 온라인상 저작권의 권한귀속 및 침해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의 상소사건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한다. 당사자가 광저우 인터넷법원이 내린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한 사건은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하지만, 온라인상 저작권 권한귀속 및 침해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의 상소사건은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이 심리한다. 당사자가 항저우 인터넷법원이 내린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한 사건은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제5조 인터넷법원은 인터넷 소송플랫폼(이하 '소송플랫폼')을 구축해서 법원의 사건 처리 및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자의 소송행위실시를 위한 전용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 소송플랫폼을 통하여 행한 소송행위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인터넷법원의 사건 심리에 필요한 데이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유관 국가기관이 제공해야 하며, 질서정연하게 소송플랫폼에 접속해야 하며, 인터넷법원이 온라인상 조사확인, 실시간 고정,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소송플랫폼상 데이터의 저장과 사용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자가 소송플랫폼을 사용하여 실시한 소송행위는 반드시 증명서 증명사진에 대한 대조, 생물특정식별 또는 국가통일신분인증 플랫폼상의 인증 등 온라인 방식으로 신분을 인증해야 하며 또한 등록소송플랫폼의 전용아이디를 취득해야만 한다. 전용아이디를 사용하여 소송플랫폼에서 한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인정되며, 소송플랫폼 자체의 기술적 원인으로 인하여 시스템 착오 또는 피인증인이 소송플랫폼 아이디가 도용됐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7조 인터넷법원은 온라인에서 원고의 기소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 ① 기소조건에 부합할 경우, 입안을 등기하고 사건수리통지서, 소송비용 납부통지서, 입증통지서 등 소송문서를 송달해야 한다.

- ② 제출한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보정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보정자료를 받은 날의 익일로 부터 수리시간을 계산한다. 원고가 지정기한 내에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 기소자료는 반송 처리한다.
- ③ 기소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석명(釋明)을 했지만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기소자료는 반송 처리한다. 원고가 계속적으로 기소를 주장하는 경우, 법에 따라 불수리 재정을 한다.

제8조 인터넷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이후, 원고가 제공한 핸드폰 번호, 팩스, 이메일, 즉시통신(SNS 메신저) 아이디 등을 통하여 피고, 제3자에게 소송플랫폼을 통하여 사건과의 관련 및 신분검증을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피고와 제3자는 소송플랫폼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확인한 후 소송자료를 받거나 제출하고, 소송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법원이 온라인상 증거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온라인상에서 전자데이터를 업로드 하여 소송플랫폼에 입력하거나 또는 오프라인에서 증거를 스캔, 사진으로 복제, (녹음·녹화한 것을)복사 등 방식으로 전자화(디지털화) 처리를 한 이후 소송플랫폼에 업로드 하여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소송플랫폼에 입력한 전자데이터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자는 기술수단을 통하여 신분증명, 영업집조부분, 수권위탁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 등 소송자료 및 서증, 감정 의견, 감정 기록 등 증거자료를 전자화 처리한 이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법원의 심사확인을 거쳐 통과한 경우에는 원본형식 요구에 부합한다고 간주한다.

제11조 당사자가 전자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터넷법원은 질증의 상황과 결합하여 전자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전송과정의 진실성을 심사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아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 ① 전자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전송에 사용된 컴퓨터시스템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 ② 전자데이터 생성주체와 시간이 명확한지 여부, 표현내용이 선명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지 여부
- ③ 전자데이터의 저장보관매체가 명확한 지 여부, 보관방식과 수단이 적절한 지 여부
- ④ 전자데이터 추출 및 고정 의 주체, 도구와 방식을 신뢰할 수 있는지, 추출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

- ⑤ 전자데이터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수정 및 불완전 등 상황이 있는지 여부
- ⑥ 전자데이터 특정형식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지. 당사자가 제출한 전자데이터를 전자서명, 신뢰 타임스탬프(trusted timestamp), 디지털-피버 해시 컴퓨터(digital-fever hash computer), 블록체인 등 증거수집, 고정 및 무단수정 금지 기술 또는 디지털 포렌식 인증서(electronic forensic certificate) 플랫폼을 통하여 인증되었고, 그 진실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터넷법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전자데이터 기술문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자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감정을 위탁하거나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가지고 대조·확인할 수 있다.

제12조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영상방식으로 재판을 개시한다. 법정에서 신분에 대한 조사·확인, 원본에 대한 대조·확인, 실물에 대한 검사가 필요 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법원은 오프라인에서 재판을 열 수 있지만, 기타 소송과정은 여전히 온라인상 진행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법원은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간이재판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 ① 개정 이전 당사자의 신분확인, 권리의무고지, 재판기율선서를 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개정 시 중복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온라인상 증거교환을 완료했고, 쟁의가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재판 중 설명한 후 재차 입증 및 질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사자의 진술, 법정조사, 법정변론 등 재판과정을 합병해서 진행할 수 있다. 간단한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은 직접 소송청구 또는 사건요소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재판의 특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법정규칙의 유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하여 인터넷 고장, 설비훼손, 전력중단 또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적시에 온라인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참가거부(拒不到庭)'로 간주하며, 재판 중 독단적으로 퇴장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장(中途退庭)'으로 간주하며, 각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5조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인터넷법원은 중국심판절차정보공개망(中国审判流程信息公开网), 소송플랫폼, 핸드폰 문자, 팩스, 전자메일, 즉시통신 아이디 등 전자방식으로 소송문서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송달한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중 전자송달을 하기로 이미 약정한 경우 또는 답신을 통하여 숙지했거나, 상응한 소송행위 등의 방식으로 이미 보내진 전자송달의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소송행위를 했거나 또한 전자송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자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6조 인터넷법원이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전자송달의 구체적 방식과 주소를 확인하고, 전자송달의 적용범위, 효력, 송달주소변경방식 및 기타 고지가 필요한 송달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피송달인이 유효한 전자송달주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법원은 피송달인 본인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자주 사용한 핸드폰 번호, 전자메일, 즉시통신 아이디 등 상용전자주소를 우선 송달주소로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 인터넷법원이 피송달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확인한 전자주소로 송달한 경우, 송달정보가 피송달인의 특정시스템에 도달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인터넷법원이 피송달인이 자주 사용하는 전자주소 또는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전자주소로 송달한 경우, 아래의 상황에 근거하여 송달여부를 확정한다.

- ① 피송달인이 송달자료를 받았다고 답신한 경우 또는 송달내용에 근거하여 상응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 송달이 유효하다고 간주한다.
- ② 피송달인이 매개시스템(이메일)이 이미 피송달인이 읽었다고 자동으로 답신하는 경우 또는 기타 증거를 통하여 피송달인이 이미 받아서 숙지하고 있을 경우 유효한 송달이 있었다고 추정하지만, 피송달인이 자신의 매개시스템에 착오가 있다거나, 송달주소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본인이 숙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유효한 송달이 있는 경우, 인터넷법원은 반드시 전자송달증명서를 작성해야한다. 전자송달증명서는 송달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공고와 송달이 필요한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한 간단한 민사사건의 경우, 인터넷법원은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19조** 인터넷법원이 온라인에서 심리할 경우, 심판인원, 법관조리, 서기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자 등은 온라인상 확인, 전자서명 등 온라인 방식으로 조정협의, (법정심문)기록, 전자송달증명서 기타 소송자료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상 '서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20조** 인터넷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경우, 조정, 증거교환, 재판, 합의 등 소송과정에서 음성인식기술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다. 전자기록은 온라인방식으로 확인을 거친 이후, 서면기록과 동일한 법률효력을 가진다.
- 제21조** 인터넷법원은 반드시 소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파일을 동시에 생성하며, 전자문서를 제작한다. 사건의 종이문서가 이미 전자문서로 전환된 경우,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를 대신해서 상소이송 및 파일로 보관된다.
- 제22조** 당사자가 인터넷법원이 심리한 사건에 대한 상소를 제기한 경우, 2심 법원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방식의 심리를 채택한다. 2심 법원의 온라인 심리규칙은 동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제23조** 동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사법해석이 동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 동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